

의안번호	2215948
의 퇴 인	김태호 의원
회 답 일	2026. 1. 21.
추계번호	26F0089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정보보호비용 지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5조의9(정보보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)	○ 기업이 정보보호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해당 기업의 법인세 및 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조세특례 신설 - 공제대상: 정보보호비용 ※ 정보보호시스템 구축, 보험 가입, 전문인력 채용 등 - 공제율(%): 30 - 공제한도: 해당 과세연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% - 적용기한: 2030.12.31.	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25조의9(정보보호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개정안에 따라 정보보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법인세 및 소득세수의 감소가 예상됨(안 제25조의9)

- 개정안은 기업이 정보보호시스템 구축, 정보보호 관련 보험 가입비용, 정보보호 전문인력 채용 비용 등 정보보호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일부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하는 특례를 신설하고자 함
 - 공제율: 30%
 - 공제한도: 해당 과세연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%
 - 적용기한: 2030.12.31.

-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향후 기업이 지출하는 정보 보호시스템 구축 비용 및 정보보호 보험료 등의 규모 등을 추정해야 하나, 추정의 기초자료가 부재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음
- 신설조항에 따른 공제액을 추계하기 위해서는 기업별로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비용 및 정보보호 보험료에 지출하는 비용에 대한 현황 등의 기초자료가 필요하나, 자료가 부재하여 향후 공제대상이 되는 비용을 추계할 수 없음
 - 참고로, 「국내 정보보호산업 실태조사」에 따르면, 2024년말 기준 정보 보안시스템 유지 관리 등의 매출액은 7,770억원 수준이지만, 이를 지출한 거래기업의 기업규모나 개별 비용지출에 대한 정보가 부재하여 이를 바탕으로 공제액을 추계할 수 없음

[표 1] 정보보안 관련 서비스 산업중분류별 매출현황

(단위: 억원)

산업	보안시스템 유지관리 등	보안관제 서비스	보안교육 및 훈련 서비스	보안인증 서비스	계
매출액	7,770	4,364	478	1,098	20,136

자료: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, 「2025년 국내 정보보호산업 실태조사」, 2025.10.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장설희	백경엽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장설희	02-6788-4836	shjang@assembly.go.kr